

연구직 재임용규칙 [1997. 12. 31 규칙 제41호]

일부개정 1999. 3. 23 규칙 제 60호

1999. 6. 16 규칙 제 76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01. 4. 25 규칙 제102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03. 9. 15 규칙 제152호

2012. 6. 4 규칙 제259호(위원회 운영규칙)

2013. 5. 2 규칙 제271호

2014. 12. 22 규칙 제287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17. 2. 27 규정 제159호(직제규정)

2019. 6. 11 규칙 제337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23. 6. 1 규칙 제370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25. 6. 30 규칙 제370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25. 8. 12 규칙 제41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인사복무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연구직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연구직의 재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 (개정 99.6.16)

제3조(재임용 심의등) 연구직의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복무규정 제61조에 의한 “인사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(개정 2012.6.4., 2025.8.12.)

[전문개정 2003.9.15]

제4조(재임용) 계약기간이 만료된 연구원을 재임용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원장은 신규임용자의 최초 재임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(개정 99.3.23, 2003.9.15., 2012.6.4.,2013.5.2)

제5조(위원회의 소집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각각 소집한다.

1. 연구직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(개정 2013.5.2.)
2. 계약기간중 연구직의 해임사유 발생시
3.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의 1/2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

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. (개정 2012.6.4)

1. 연구직의 재계약 기준에 관한 사항(개정 2013.5.2.)
2. 기타 연구직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
- ② (개정 99.3.23) 삭제 (2003.9.15)
- ③ (개정 99.2.23) 삭제 (2003.9.15)
- ④ 삭제 (2003.9.15)

제6조의2(재임용 평정대상기간) 연구직의 재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의하되 평정대상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3.9.15]

제7조(자료제출) 행정지원실장은 재임용심의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 2001.4.25., 2014.12.22., 2017.2.27., 2019.6.11., 2023.6.1., 2025.6.30.)

[전문개정 2003.9.15]

제8조(심의결과) 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. (개정 99.3.23, 2003.9.15, 2012.6.4)

제9조(위원의 제척) 위원회의 위원중 재임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위원회에서 제외된다. 다만, 제척위원이라도 의사정족수 미달시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. (개정 2003.9.15, 2012.6.4)

제10조(심의결과의 공개 제한) 재임용심의 결과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99. 3.23)

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연구직의 재임용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(99. 6.16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4.25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9.15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6. 4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5. 2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2. 22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2. 27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6. 11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6. 1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6. 30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 8. 12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(2003.9.15)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(2003.9.15.)